



등록번호 : 20080200095

최초 등록일: 2008.08.01

최종 등록일: 2025.02.26

홈페이지 주소

www.speedmate.com

대표 이메일 주소

chic@sk.com

Speedmate

정 보 공 개 서

SK스피드메이트(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SK스피드메이트(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19(송죽동)
- 대표전화번호 : 02-1600-1600
- 팩스번호 : 070-7800-0819
-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SM가맹사업팀, 02-1600-1600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SM가맹사업팀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II. 가맹본부의 Speedmate 가맹사업 현황 -----	5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IV-1. 가맹 (A)형-----	11
IV-2. 가맹 (B)형-----	17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1. 가맹 (A)형-----	23
V-2. 가맹 (B)형-----	37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1. 가맹 (A)형-----	53
VI-2. 가맹 (B)형-----	5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VII-1. 가맹 (A)형-----	56
VII-2. 가맹 (B)형-----	57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5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59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SK스피드메이트(주)	Speedmate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19(송죽동)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9.01	2024.09.02	2024.09.01	안무인	02-1600-1600	070-7800-0819
	법인등록번호		130111-1198836		사업자등록번호	788-87-03184

* Speedmate 가맹사업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SM가맹사업팀 (연락처 : 02-1600-1600)

** 24.9.1일부 SK네트웍스에서 물적분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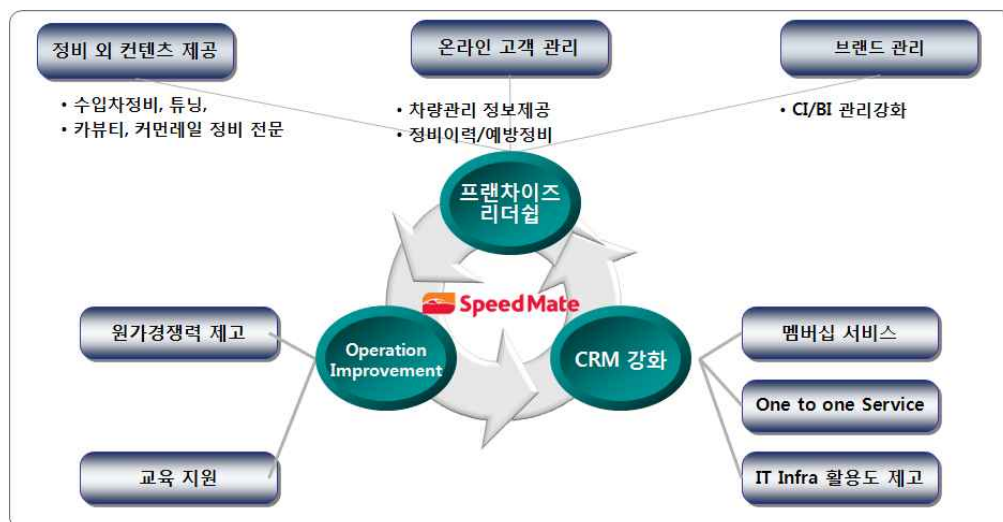
1993년 사업을 런칭한 Speedmate는 유행유 유통을 기반으로 사업을 출발하였으나, 가맹점 통제 능력 미비와 System 미구축으로 사업철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한 교훈으로 99년 Brand Re-lunching을 통해 효과적인 가맹점 관리 System을 구축하고 제휴/대형거래처와 같은 집객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자동차정비업계를 선도하는 전문정비업 Franchise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1) 스피드메이트의 사업 영역

Speedmate는 380만 차량 고객의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전문정비, ERS, 부품 유통 등을 보유한 Aftermarket No.1 Brand 입니다.

2)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Speedmate의 근간 사업으로「양질의 점포 개발(입지 및 H/W), 점포관리 역량, 체계화된 교육 지원, 제휴 멤버쉽 등 집객 및 고객관리 역량, 우수한 경영지원 System, 가맹점 경영 Consulting능력」등 6가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고객 접점에서 CS강화 및 주치점 개념의 CRM구축을 통해 고객가치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안무인	SK스피드메이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19(송죽동)	
	재임 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9.1 ~ 현재		02-1600-1600	070-7800-0819
관계	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기타상무이사	유봉운	SK스피드메이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19(송죽동)	
	재임 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9.1 ~ 현재		02-1600-1600	070-7800-0819
관계	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주 소
기타상무이사	황용민	SK스피드메이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19(송죽동)	
	재임 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9.1 ~ 현재		02-1600-1600	070-7800-0819
관계	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감사	박소아	SK스피드메이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19(송죽동)	
	재임 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9.1 ~ 현재		02-1600-1600	070-7800-0819

* 24.9.1일부 SK네트웍스에서 물적분할 하였음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현황 (요약)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 회사수 (단위 : 사)		
	상장	비상장	계
에스케이	21	838	859

* 해외계열회사 포함 기준, 해외계열회사는 비상장으로 분류함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사항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Speedmate"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Speedmate	차(Speed)의 친구(Mate)의 합성어
상 호	스피드메이트 OO점	일반적으로 지역명을 사용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2145670000 호 외9종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680,546,636	3,634,725,292	2,045,821,344	8,152,466,983	(23,901,692)	55,843,391
2022년	5,027,337,043	3,029,076,611	1,998,260,432	6,612,594,929	5,125,907	6,090,945
2023년	4,643,838,640	2,747,290,730	1,896,547,910	6,088,581,799	41,606,278	28,773,594

* 24.9.1일부 SK네트웍스에서 물적분할 하였음. 해당 재무상황은 분할 전 SK네트웍스 기준임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안무인	임원	2022.3 ~ 2023.2	부품사업부 사업부장	사업부장
		2023.3 ~ 2024.8	스피드메이트 사업부장	사업부장
	대표이사	2024.9 ~	SK스피드메이트(주) 대표이사	대표이사

* 24.9.1일부 SK네트웍스에서 물적분할 하였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등기	미등기	
2023년 12월 31일	7	1	1,649

* 직원수 : 이행상황신고서 기준. 임원수 : 분할 전 현황

** 24.9.1 일부 SK네트웍스에서 물적분할 하였음. 해당 임직원수는 분할 전 SK네트웍스 기준임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Speedmate (상표권)	상호,상표,의장, 저작권,간판,포장,라 벨의 사용 영업기술,정보, 운영Manual, 지침서, 전산Software, 사용양식	2011.8.4 등록	출원:41-2010-0008236 등록:41-0214567-0000	SK스피드메이트(주) SK에너지(주)	2031.8.4
		2012.3.27 등록	출원:40-2010-0017297 등록:40-0912566-0000		2032.3.27
		2012.3.27. 등록	출원:40-2010-0017296 등록:40-0912584-0000		2032.3.2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Speedmate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1993년 3월 11일

2. Speedmate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SK네트웍스(주)	Speedmate	정만원	2003.10 ~ 2008.12	서울 삼성동
		이창규	2009.01 ~ 2012.12	서울 삼성동
		문덕규	2013.01 ~ 2015.03	서울 삼성동
		문종훈	2015.03 ~ 2017.03	서울 삼성동
		최신원, 박상규	2017.03 ~ 2021.11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박상규	2021.11 ~ 2023.02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이호정	2023.03 ~ 2024.08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SK스피드메이트(주)		안무인	2024.09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 Speedmate 업종

영업표지	업종	
Speedmate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자동차 관련	자동차 정비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Speedmate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직영점 없음)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A형)수	가맹점 (B형)수	전체	가맹점 (A형)수	가맹점 (B형)수	전체	가맹점 (A형)수	가맹점 (B형)수
전체	630	220	410	605	211	394	590	206	384
서울	70	26	44	67	25	42	62	23	39
부산	33	8	25	28	6	22	28	6	22
대구	41	13	28	40	12	28	40	12	28
인천	36	9	27	36	9	27	36	9	27
광주	23	11	12	23	11	12	23	11	12
대전	24	4	20	24	4	20	24	4	20
울산	14	6	8	13	6	7	12	5	7
세종	4	1	3	4	1	3	5	1	4

경기	189	59	130	180	60	120	176	60	116
강원	27	14	13	27	14	13	27	14	13
충북	16	7	9	16	7	9	16	7	9
충남	29	19	10	27	17	10	26	16	10
전북	20	7	13	20	7	13	19	7	12
전남	17	9	8	16	8	8	16	8	8
경북	40	18	22	39	17	22	35	16	19
경남	38	8	30	35	6	29	35	6	29
제주	9	1	8	10	1	9	10	1	9

5. 최근 3년간 Speedmate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구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	가맹점	639	15	-	24	-	630	(9)
2022	가맹점	630	6	-	31	-	605	(25)
2023	가맹점	605	3	-	18	-	590	(15)

* 연말 가맹점 수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해지)

Speedmate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www.speedmate.com)를 확인하십시오.

6. Speedmate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점포가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가맹점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금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상한)		연간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90	359,041	5,046	1,580,571	43,244	2,392	13	588
서울	62	397,407	7,896	1,231,954	279,51	83,70	139	62
부산	28	409,274	4,668	1,047,261	14,652	25,974	502	28
대구	40	254,197	4,367	686,597	14,641	23,826	1,191	40
인천	36	380,730	7,459	976,567	25,531	25,125	222	36
광주	23	324,086	3,854	1,003,451	19,402	27,304	137	23
대전	24	315,882	4,681	694,852	16,765	50,327	252	24

울산	12	224,468	2,810	463,383	8,995	74,845	254	12
세종	5	661,850	12,567	1,161,717	22,252	317,490	4,536	5
경기	176	413,483	6,089	1,580,571	26,072	16,368	711	174
강원	27	315,801	2,779	1,043,094	19,949	52,907	653	27
충북	16	328,049	3,836	562,197	11,244	97,635	612	16
충남	26	321,013	2,905	773,151	43,244	32,765	263	26
전북	19	275,034	3,625	635,506	11,387	49,426	330	19
전남	16	306,464	2,979	751,053	10,080	34,231	151	16
경북	35	291,398	4,178	1,470,857	18,230	20,772	198	35
경남	35	320,367	5,452	1,263,808	17,087	44,717	664	35
제주	10	449,621	7,404	1,046,432	16,893	2,392	13	10

* 위 표의 자료는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매출액은 6개월 이상 영업한(매출액이 있는)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경우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 비교란은 매출액 산출 대상 가맹점수입니다.

■ 가맹(A)형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금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상한)		연간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06	235,462	2,547	1,470,857	19,223	2,392	13	205
서울	23	276,809	5,081	576,691	19,223	8,370	139	23
부산	6	224,983	1,453	399,848	5,212	25,974	502	6
대구	12	173,683	2,645	350,260	10,225	23,826	1,191	12
인천	9	180,217	3,160	434,899	14,497	25,125	222	9
광주	11	220,630	2,346	799,345	9,296	27,304	137	11
대전	4	5개 미만 제외						4
울산	5	151,280	1,333	259,495	6,496	74,845	254	5
세종	1	5개 미만 제외						1
경기	60	240,723	3,361	1,109,753	16,215	16,368	204	59
강원	14	248,605	1,878	1,043,094	10,431	52,907	653	14
충북	7	337,874	2,784	562,197	11,244	97,635	612	7
충남	16	254,452	1,775	476,865	15,896	32,765	263	16
전북	7	156,912	1,441	290,433	4,678	49,426	330	7
전남	8	222,665	1,646	751,053	10,080	34,231	151	8

경북	16	252,350	2,642	1,470,857	7,354	20,772	198	16
경남	6	208,421	2,615	409,083	5,114	44,717	664	6
제주	1	5개 미만 제외						1

*비고 : 산출 대상 가맹점 수

■ 가맹(B)형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금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상한)		연간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384	425,185	7,117	1,580,571	43,244	70,615	1,200	383
서울	39	468,529	9,784	1,231,994	27,951	180,129	3,839	39
부산	22	459,536	6,625	1,047,261	14,652	126,838	2,554	22
대구	28	288,703	5,248	686,597	14,641	146,863	1,721	28
인천	27	447,568	9,125	976,567	25,531	136,839	3,427	27
광주	12	418,921	5,589	1,003,451	19,402	188,688	2,376	12
대전	20	326,233	6,072	694,852	16,765	97,709	1,858	20
울산	7	276,746	4,952	463,383	8,995	126,318	2,618	7
세종	4	5개 미만 제외						4
경기	116	502,117	7,608	1,580,571	26,072	135,277	1,200	115
강원	13	388,167	4,153	822,136	19,949	151,635	1,248	13
충북	9	320,407	5,558	560,692	10,745	151,753	1,897	9
충남	10	427,509	7,375	773,151	43,244	70,615	1,503	10
전북	12	343,938	6,075	635,506	11,387	163,663	2,223	12
전남	8	390,263	5,539	740,604	9,815	104,647	1,495	8
경북	19	324,280	6,750	577,866	18,230	90,761	2,996	19
경남	29	343,528	6,311	1,263,808	17,087	106,319	2,538	29
제주	9	499,313	10,517	1,046,432	16,893	140,161	3,730	9

*비고 : 산출 대상 가맹점 수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전 사업연도 말 가맹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일)
2023	590	5,130

※ 가맹점 (A)형, (B)형 구분 없이 산출된 내역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3년에 Speedmate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와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959백만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7페이지, 5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959,318	 (비공개)	-	
광고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하나은행에 예치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온라인 등록 : www.hanaescrow.com)	1599-1114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Speedmate 가맹사업은 가맹점 점포의 선정과 토지 사용권의 확보 및 제반 시설과 장비 투자를 가맹점주 본인이 결정하고 부담하여 정액으로 가맹료(Royalty)를 납부하는 가맹(A)형(가맹점주 투자형 가맹)과 가맹본부가 토지·시설·장비 전부에 투자하여 가맹점을 확보한 다음 해당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을 전제로 무상의 토지·시설·장비 사용권 등 운영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점 이익의 일정 비율을 가맹료(Royalty)로 납부하는 가맹(B)형(가맹본부 투자형 가맹)이 있습니다.

Ⅳ-1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A)형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Speedmate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총 1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점포 설비를 위하여 약 145,500 ~ 185,000천원(점포의 임차비용은 제외)필요 합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5,000	계약 체결시	반환되지 않음	Open시 해당매장 지원 비용	

* 교육비, 개업판촉지원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천원)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가맹보증금	5,000	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본 계약 해지 시	전액 미 반환
			Royalty 미지급 물품대금 미지급 고객 Claim에 대한 배상 미지급 기타 가맹대리점에게 입힌 손해	해당금액 미 반환

3) 예치하는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5,000천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합계	10,000
최초 가맹금	5,000
가맹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5,500~ 185,000]				
간판	협력업체	5,000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가맹본부 소유자산	가맹본부 무상지원
자동오일주입기	협력업체	5,000				
필수장비		80,000			경정비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 시설 투자로 가맹본부 에서 가이드만 제공. 반환 대상이 아님	법정장비 구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90,000(고급형) 65,000(표준형) 50,000(절감형)	1,500 1,083 833			198m ² 기준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협력업체	2,200~3,300		납품후 20일		사무집기 등
최초 공급 부품(상품) 비용	가맹본부	3,300~7,700		물품 공급 1일 이전	부품 하자시 반환	

※ 위 표의 금액은 3 Bay 기준으로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 접수 → 담당자 배정 → 상담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수익성 분석 → 가맹희망자 동의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자동차부분정비업등록 허가 득 정비책임자 선임 할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 일 것 (미성년자 제외)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Speedmate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료 (Royalty)	가맹본부	지역/규모/매출별 차등	익월 10일	없음		아래 참조
광고 분담금	-	해당 없음				
판촉비	-	판촉행사별 차등 적용				소요 비용 개별 부담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 내용별 차등				
System 사용료	-	해당 없음				Web POS
영업표지 변경	-	해당 없음				
점포 환경 개선 비용	-	해당 없음				
지연 이자	-	해당 없음				

※ 가맹료 산정 기준 표 : 최초 계약시 적용 기준

(단위: 천원/월, VAT포함)

구 분	중소도시	광역시	수도권 (서울/경기)
2Bay	330~550	660~880	770~990
3Bay	550~770	770~990	880~1,100
4Bay 이상	770~990	880~1,100	1,100 ~

가. 가맹계약 갱신 시 전년 소매매출액 기준으로 가맹료 재산정하여 합의서 작성

나. 전년 영업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 가맹료 유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해당 사항 없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할 경우 또는 시설물 추가 지원 시 가맹료에 대한 조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Speedmate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따르며, 별도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Speedmate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IV-2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B)형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Speedmate가맹(B)형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장의 입지·규모·목적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이 위치할 대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인·익스테리어 공사 및 시설·장비의 투자 등 가맹점의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투자를 전부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가맹본부가 시행함으로써 동 사업장에서 Speedmate 자동차전문정비 가맹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개발을 완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동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시설 등의 유지·보수·교체비용(이하 "수선 등"이라 한다)도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가맹점 유형을 의미한다.

가맹(B)형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부분 정비업 등록요건 이상을 구비하고 관련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제반 행정 요건을 취득하여야 하고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가맹(B)형 가맹점주 교육을 이수하고 성취도 평가를 통해 가맹(B)형 가맹점주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 6)항과 같이 점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상품재고 등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B)형의 가맹사업 구조에 따라 가맹점주가 별도로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보증금	가맹본부	해당사항 없음	징구하지 않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B)형의 경우도 가맹점주가 별도로 예치해야하는 가맹보증금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가맹보증금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해당 사항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가맹본부가 부담)

※ 참고 : 가맹본부 투자 사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5,500~ 185,000]				가맹본부 투자 후 가맹점주에 사용대차 (198m ² 기준)
간판	협력업체	0			가맹본부 자산으로 반환내용 없음.	
자동오일주입기	협력업체					
필수장비		80,000		설치 1일 이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90,000(고급형) 65,000(표준형) 50,000(절감형)	1,155 880 44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최초 공급 부품(상품) 비용	가맹본부	3,300~7,700		물품 공급 1일 이전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협력업체	2,200~3,300		납품후 20일		

5) 가맹점주의 자격요건

가맹(B)형 가맹점주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하여 자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 신청 자격: 경력 8년차 이상 고급교육 수료자

나) 교육 과정: 입문 ~ 전문가 과정

다) 교육 이수 요건 : 4개 교육 과정 이수 및 수료

라) 교육 과정 상세

a) 입문자 과정 (온라인 교육)

과목	내용	시간
스피드메이트 소개	스피드메이트 사업의 이해	5분
제휴/멤버십의 이해	제휴/멤버십의 히스토리, 제공방법	30분
WebPOS의 이해	웹포스 사용 기본	50분
착한 정비문화 만들기	착한 정비 문화 만들기 캠페인 취지	17분
사업장 환경 안전수칙	사업장 환경 안전 수칙	10분
CS/MOT Process 메뉴얼	고객응대 기법	34분
22Point 안전점검 표준절차	22Point 안전점검 표준 절차 설명	27분
합계		173분

b) 중급과정

구분		중급과정 Junior technician				
교육대상		경력 3년차 (24월 초과) 이상 입문수료자 - 외부경력 5년 이상 -				
교육기간(시간)		1박 2일 (14시간)				
교육목적		SM Value를 갖추고, 사업장의 중간자 수행역량 강화				
일정		과목명	목표	내용	시간	강사
1일차	10:00	과정안내 및 ICE Breaking	일정 숙지	과정소개/일정안내	1	교육담당자
	11:00	스피드메이트 소개	스피드메이트의 이해	SM 제도, 복지, 비전	1	교육담당자
	12:00	중식				
	13:00	끌어올리다 (셀프리더십)	조직과 나를 성장 시키는 긍정 마인드	나를 움직이는 셀프 리더십	3	사외강사
	14:00					
	15:00					
	16:00	기술세미나	자동차 정비 기술 트렌드 이해	급 변하는 자동차 정비 시장의 미래 예측	2	사외강사
	17:00					
18:00	석식					
2일차	9:00	끌어올리다 (고객응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패러다임을 이해 CS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 마인드 배양	고객 서비스의 히든 법칙 (서비스 시그널)	3	사외강사
	10:00					
	11:00					
	12:00	중식				
	13:00	고객불만사례 및 Workshop I	고객 응대 중점 항목 실행	고객 응대 Key Point와 참고사항	3	문양호실장
	14:00					
	15:00					
	16:00	Wrap up	과정 메시지	과정 정리 및 메시지 전달	1	교육담당자
17:00	수료					

c) 고급과정

구분		고급과정 senior technician				
교육대상		경력 5년자 (48월 초과) 이상 중급 수료자 - 외부경력 7년 -				
교육기간(시간)		1박 2일 (14시간)				
교육목적		핵심 인력으로서 전문 역량을 후배에게 지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일정		과목명	목표	내용	시간	강사
1일차	10:00	과정안내 및 ICE Breaking	일정 숙지	과정소개/일정안내	1	교육담당자
	11:00	행복한 Team Building	Teamwork 형성	Team Building 게임	1	교육담당자
	12:00	중식				
	13:00	쏘아올리다 (상황대응 리더십)	팀원의 발달 수준을 진단 하고, 그에 맞는 리더십 역량을 개발한다	팀원과 함께 성장하는 현장 리더십	3	사외강사
	14:00					
	15:00					
	16:00	New Contents	현장에 적용 할 새로운 정비기술을 보는 시각	현장에 적용 할 새로운 정비기술의 적용 사례	2	사외강사
	17:00					
18:00	석식					
2일차	9:00	쏘아올리다 (코칭 커뮤니케이션)	셀프 코칭을 통한 코칭 프로세스를 체험해 보고 코칭의 설득력을 높인다	최고의 리더 코칭으로 리더하라	3	사외강사
	10:00					
	11:00					
	12:00	중식				
	13:00	고객불만사례 및 Workshop Ⅲ	중대 과실로 인한 피해의 문제점	고객 불만 유형의 세부 내용 공유	3	문양호실장
	14:00					
	15:00					
	16:00	Wrap up	과정 메시지	과정 정리 및 메시지 전달	1	교육담당자
	17:00	수료				

c) 전문가 과정

구분		전문가과정 Pro technition				
교육대상		경력 8년차 (84月 초과) 이상 고급 수료자 - 외부경력 11년 이상 -				
교육기간(시간)		1박 2일 (14시간)				
교육목적		Car Life 전문가로서 Leadership 향상을 통해 예비 운영인으로 양성				
일정		과목명	목표	내용	시간	강사
1일차	10:00	과정안내 및 ICE Breaking	일정 숙지	과정소개/일정안내	1	교육담당자
	11:00	경영총과의 대화	사업의 이해	사업 전반 설명 및 문/답	1	상무님
	12:00	중식				
	13:00	뜻을 올리다 (최종 리더십)	4차산업의 변화를 바라보고 CS 운영의 새로운 관점을 찾는다	변화의 패러다임 리더십-영향력 다짐과 실천	3	사외강사
	14:00					
	15:00					
	16:00	사업장 운영 BP사례	사업장 운영 Now How 습득	현사업장 점주의 운영 Now How 전수	2	사외강사
	17:00					
18:00	석식					
2일차	9:00	뜻을 올리다 (협상 커뮤니케이션)	정확한 문제 분석 배려가 있는 설득 매너가 있는 협상	상호 보완하는 협상 스킬	3	사외강사
	10:00					
	11:00					
	12:00	중식				
	13:00	고객불만사례 및 Workshop IV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고객불만점수, 해피콜 점수)	해피콜 만족도 조사 내용 고객 불만 건수와 유형별 상황	3	문양호실장
	14:00					
	15:00					
	16:00	Wrap up	과정 메시지	과정 정리 및 메시지 전달	1	교육담당자
	17:00	수료				

마) 교육 신청 및 교육 공지

온라인 교육은 speedmate.learningmate.co.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며, 기타 오프라인 교육은 당사 webpos 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

- 6) 귀하가 가맹(B)형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소유의 시설과 가맹본부의 부담에 따른 재고의 운영, 가맹료, 매입제품 대금 등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의 담보로서 아래 전년 해당 매장 월평균매출액 기준에 따라 가맹계약 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월 평균 매출액	담보액
~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5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보증보험료(年) 담보액의 약 0.8792%는 가맹점주 부담 ('23년 기준)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료	가맹본부	매출별 차등	익월 10일	없음		아래 참조
광고 분담금	-	해당 없음				
판촉비	-	판촉행사별 차등 적용				소요 비용 개별 부담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 내용별 차등				
System 사용료	-	해당 없음				Web POS
영업표지 변경	-	해당 없음				
점포 환경 개선 비용	-	해당 없음				
지연 이자	-	해당 없음				

※ 가맹료 산정 기준 표 (최초 계약시 적용 기준)

① 가맹료 산정 기준

- 매출구간별 매출이익에 따른 가맹료율 적용

② 가맹료 구성 요소별 내역

가) 매출이익의 정의

매출액(전산상 총매출) - 매출원가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당월 매입 총액)

나) 매출이익에 따른 가맹료 산정 (23년 말 기준)

매출액 구분	가맹료율
1.5천만원 이하의 매출액분	43%
1.5천만원 초과 매출액분	50%

※ 향후 가맹료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정비 限. 타이어, 멤버십 등 별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해당 사항 없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할 경우 또는 시설물 추가 지원시 가맹료에 대한 조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 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Speedmate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따르며 별도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맹(B)형은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가맹점 개발 및 제반 시설을 가맹본부에서 투자하여 토지·시설·장비 사용권을 확보하고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명의를 반드시 가맹점주에게 항상 불가분적 일체로 함께 귀속되는 것을 사업의 본질로 하고 있기에 가맹점주 임의로 운영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정보공개서 18 ~ 20페이지 가맹점주의 자격요건을 확보하고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Speedmate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1.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A)형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Speedmate가맹사업 가맹(A)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스피드메이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천원, VAT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스피드메이트 가맹점사업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②	금액 ^③	비고 ^④
--------------------	-------	-------	----------------------------	-----------------	-----------------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 사항 없음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권장가격을 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권장소비자 가격에 비하여 10%이상 고가나 염가로 판매할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하는 품목은 가맹사업 System에 제공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 지역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자동차 정비 및 용품 판매업	Speedmate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포의 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가맹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내로 하나, 다음의 사항을 따릅니다. ① 신규점포의 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 계약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중인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는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의 신규점포를 개설, 운영하지 않습니다.	
② 2014년 8월 14일 이전에 개설하여 현재 운영중인 기존점포의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2014년 8월 14일 기준으로 특정 가맹점포들이 이미 상호 반경 500m 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영업지역의 반경을 당사 및 당사자인 가맹점포들의 가맹점 사업자들과 상호 협의하여, 500m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제1항의 영업지역을 변경 내지 재조정 등 할 수 없으나,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상기 영업지역 설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포의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신규가맹점을 개설, 운영 하거나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하천, 철도, 도로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현저하게 구분 되는 경우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지하상가 또는 특수상권에 존재하는 경우 ④ 학교 등 거점 기관, 인구, 세대 수,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Speedmate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스피드메이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을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구분
할인점	이마트	워셔액/와이퍼/PB오일	부품/용품 판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Speedmate	www.speedmate.com	멤버십, 엔진오일	탑재 서비스 상이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9%	0%	1%	0%

* 온라인 결제 금액 기준 (PG사 금액)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Speedmate 가맹(A)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법령
○ 가맹계약상의 가맹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1, 3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 1,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두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개업 전 해지 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 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개점 예정일 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SKSM"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보증금 및 손해배상에 대 하여는 제20조 제3항을 준용한다. 나."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점 예정일로부터 일주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전항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절차의 지연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1항
○ 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항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으로 통보 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계약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나. 매일 발생하는 고객정보 및 매출정보를 "SKSM"이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보관, 활용 등을 한 경우 다. SpeedMate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위하여 필수적인 고객이 기대하는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Quality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부품, 비품 및 윤활유를 "SKSM"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 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가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한 경우. 단,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 "SKSM"은 "가맹점" 경영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및 권리를 승계 시킬 수 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인 경우로서 계약기간 중에 건물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제24조1항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로서 계약기간 중에 위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사. "가맹점"이 법령에 의하여 폐업 조치된 경우 아. 고객정보의 삭제 요구 등을 포함한 고객정보의 전반적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SKSM"에게 유, 무형적 손해를 입힌 때 자. 공언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SKSM"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SKSM"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본 계약상 가맹점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에게 제휴/멤버십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카. "가맹점사업자"의 정비 고의 또는 과실로 "SKSM",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 등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의 차량을 훼손한 경우 타.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불필요 또는 부당하게 과잉 정비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고객 응대를 할 때 고객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 파.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비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하. 제7조 제3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 제24조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다.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제24조2항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마.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SKSM"이 유예기간을 두고 그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였던 경우, "SKSM"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SKSM"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아.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위의 사항과 별도로 당사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을 폐지하기로 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사는 귀하가 전업 또는 사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둘 것이며 사전 서면 예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계약해지는 양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SKSM"은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 규명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가맹본부는 환경변화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
--	------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산 Software로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전산 Software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귀하와 당사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귀하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가맹사업 양도 포함)·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판매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자 담당판매원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가맹비는 제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2-1) 가맹사업의 양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가맹사업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맹본부 동의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 판매원 검토→승인여부 통지→양도양수 계약체결	
대리행사	해당사항 없음	-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귀하가 Speedmate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계약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Speedmate의 표준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 ~ 20:00 (12시간)	제한 없음	문의: SM가맹사업팀 (02-1600-1600)

※ 단, 대형마트 내 가맹점은 해당마트 지침 준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해당내용 없음

4) 가맹사업자 의무사항

가맹사업자는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가맹사업자의 영업기록

나) 고객 불만 방지를 위한 CS 및 MOT 준수

다) 영업현황 정보 제공

5)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비고
매장 청결 및 CS (9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CS준수정도 점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즉시 시정 요구 → 완료	2회/1개월	각 지역 담당판매원 및 커뮤니티리더	복장, Clean seat, 청소, 정리정돈, 예상견적서, 정비내역서, 제휴판촉 서비스 숙지정도, Happy Call
고객 모니터 평가 (25개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사전견적/정비의뢰 → 평가표 작성 → 가맹본부 보고 → 완료(사업장 F/B)	3회/매분기	본사 선정 지역별 요원	미스터리샐퍼 제도 운영

※ 관리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Speedmate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당사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 단위로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의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들 중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70% 미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의는 당사의 전산 지원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진행 합니다.

가맹점부담금 또는 비율, 판촉행사 수수료는 귀하의 가맹점에 설치된 전산 Software에 등록된 정비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하여 익월에 산정되며, 등록하지 않은 정비서비스 제공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자체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기업비밀 및 경영기술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 25조 (손해배상) 내용에 의거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동차 정비로 인하

여 당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V-2.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가맹(B)형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Speedmate 가맹(B)형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스피드메이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천원, VAT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스피드메이트 가맹점사업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②	금액 ^③	비고 ^④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 사항 없음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 사항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권장가격을 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권장소비자 가격에 비하여 10%이상 고가나 염가로 판매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상호간 협의 하여야 합니다.

(권장가격을 정하는 품목은 가맹사업 System에 제공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자동차 부분 정비 및 용품 판매업	계열회사
자동차 전문정비 및 용품 판매업	Speedmate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포의 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가맹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내로 하나, 다음의 사항을 따릅니다. ① 신규점포의 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 계약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중인 가맹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는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의 신규점포를 개설, 운영하지 않습니다. ② 2014년 8월 14일 이전에 개설하여 현재 운영중인 기존점포의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2014년 8월 14일 기준으로 특정 가맹점포들이 이미 상호 반경 500m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영업지역의 반경을 당사 및 당사자인 가맹점포들의 가맹점 사업자들과 상호 협의하여, 500m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제1항의 영업지역을 변경 내지 재조정 등 할 수 없으나,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상기 영업지역 설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포의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신규가맹점을 개설, 운영 하거나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하천, 철도, 도로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현저하게 구분 되는 경우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지하상가 또는 특수상권에 존재하는 경우 ④ 학교 등 거점 기관, 인구, 세대 수,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Speedmate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스피드메이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을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구분
할인점	이마트	워셔액/와이퍼/PB오일	부품/용품판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Speedmate	www.speedmate.com	멤버십, 엔진오일	탑재 서비스 상이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9%	0%	1%	0%

* 온라인 결제 금액 기준 (PG사 금액)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Speedmate 가맹(B)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시 1년 계약 동일함)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법령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1, 3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 1,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개업 전 해지 가맹점주가 가맹점 개점 예정일로부터 일주일의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행정절차의 지연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1항
○ 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항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으로 통보 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 계약상의 가맹점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나. 가맹 계약 제20조에 따른 “본부인도금 송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가맹 계약 제20조 제2항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위임한 결제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라. 가맹 계약 제 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SKSM”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외부 매입”을 한 경우 마. 가맹 계약 제16조 제2항에 따른 “외주 매입”을 지체 없이 전산 상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바. 가맹점이 법령에 의하여 폐업 조치된 경우 사. 고객정보의 삭제 요구 등을 포함한 고객정보의 전반적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게 유·무형적 손해를 입힌 때 아. 제 19조 제1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른 첨부 2. “사용대차 계약서”에 따른 목적물을 가맹 계약서 제3조에 명시한 가맹점 운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경우 차. 가맹점 사업자의 정비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본부,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 등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의 차량을 훼손한 경우 카. 가맹점 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불필요 또는 부당하게 과잉 정비하거나 고객응대를 할 때 고객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 타. 매일 발생하는 고객정보나 매출정보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임의로 보관, 활용 등을 한 경우 파.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정비와 연관된 다른 체인 사업에 가입하거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하.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OK캐쉬백 수수료를 적립하는 경우 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서비스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부당하게 가맹본부의 지원을 수취하는 경우 너.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SKSM”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SKSM”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본 계약상 가맹점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제33조1항

더.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1항에 따른 “최소 상근인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가맹점사업자가 “SKSM”의 2회 이상의 서면 권고를 받고도 최초 권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러. 가맹점사업자가 정비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과잉정비로 인해 고객 Claim이 발생하여 “SKSM”으로부터 2회 이상의 서면 경고를 받고도 최초 경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시정 하지 않을 경우 며. 가맹점사업자가 사명(법인의 경우 해산)한 경우 (단,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인에 대해 “SKSM”은 “본투형 가맹점” 경영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및 권리를 승계 시킬 수 있음)	(상동)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 제33조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다.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 위법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영업정비 명령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SKSM”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마.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SKSM”이 유예 기간을 두고 그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였던 경우, “SKSM”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SKSM”이 시정을 요구 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아.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제33조 2항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상동)
------------------------------------	------

위의 사항과 별도로 당사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을 폐지하기로 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사는 귀하가 전업 또는 사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둘 것이며 사전 서면예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부는 환경변화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산 Software로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전산 Software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귀하와 당사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귀하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가맹사업 양도 포함)·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판매원 검토(가맹점주의 자격요건 확보여부 및 양수인 면담 포함, 최대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 가맹사업자 담당판매원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가맹비는 제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2-1) 가맹사업의 양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가맹사업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가맹(B)형은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가맹점 개발 및 제반 시설을 가맹본부에서 투자하여 토지·시설·장비 사용권을 확보하고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명의가 반드시 가맹점주에게 항상 불가분적 일체로 함께 귀속되는 것을 사업의 본질로 하고 있기에 가맹점주 임의로 운영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정보공개서 21~23쪽 가맹점주의 자격요건을 확보하고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원칙적 불가	모든 권리의무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 판매원 검토→승인여부 통지→양도양수 계약체결	
대리행사	불가	-		
업무위탁	불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귀하가 Speedmate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계약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Speedmate의 표준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 ~ 20:00 (12시간)	제한 없음	문의: SM가맹사업팀 (02-1600-1600)

※단, 대형마트 내 가맹점은 해당마트 지침 준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아래와 같이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ay 수	~3Bay	4Bay	5Bay~
권장 상근인력	2	3	4

4) 가맹사업자 의무사항

가맹사업자는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가맹사업자의 영업기록
- 나) 고객 불만 방지를 위한 CS 및 MOT 준수
- 다) 영업현황 정보 제공
- 라) 본부인도금의 송금

※ 본부인도금의 송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가 투자한 토지·시설·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가맹본부 소유인 재고를 고객 판매시점부로 매입 운영하며 영업 활동에 따른 이익을 가맹료의 형태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본 계약의 특성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양당사자간 일괄적, 체계적인 회계처리와 일괄적 상품 구입·공급 및 대금 결제가 필요한 바 가맹점사업자의 매일의 총매출금을 당일 자정까지 가맹본부에서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본부인도금의 송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비고
매장 청결 및 CS (9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CS준수정도 점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즉시 시정 요구→ 완료	2회/1개월 (상황별)	각 지역 담당판매원 및 커뮤니티리 더	복장,Clean seat, 청소,정리정돈,예상건적 서,정비내역서,제휴판촉 서비스 숙지정도,22Point, Happy Call
고객 모니터 평가 (25개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사전견적/정비의뢰 → 평가표 작성 →가맹본부 보고 →완료(사업장 F/B)	3회/매분기 (상황별)	본사 선정 지역별 요원	미스테리샐러제도 운영

※ 관리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Speedmate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당사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 단위로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의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들 중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70% 미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의는 당사의 전산 지원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진행 합니다.

※ 가맹점부담금 또는 비율, 판촉행사 수수료는 귀하의 가맹점에 설치된 전산 Software에 등록된 정비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하여 행사 종료 시점의 익월에 정산되며, 전산 Software에 등록하지 않은 건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자체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에 의거 "가맹점사업자"는 "본투형 가맹점" 운영을 통해 취득한 고객 정보(정비이력 포함) 및 "SKSM"이 제공한 운영 Manual, 전산 Software, 가격 정보, 문서양식 등은 "SKSM"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확실히 인지하고, SpeedMate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본투형 가맹점"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SpeedMate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전 항의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영업비밀을 보관, 사용, 유출하는 등, 일절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지며, "SKSM"은 본 계약서 제33조 제2항 라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유책당사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하자로 인하여 "SKSM"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하호, 거호, 너호의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SKSM"에 발생하는 매매계약 혹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SKSM"의 모든 손해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사업장의 명도가 지연되어 해당 가맹점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직전 6개월의 월 평균 가맹료를 기준으로, 가맹점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장의 명도를 마친 날까지의 가맹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영업일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이 속한 시/군/구 등 해당 행정구역 내 영업개월이 6개월이 경과한 동일 규모 Bay 수의 SpeedMate "본투형 가맹점"의 6개월 가맹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본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가 "SKSM"의 영업비밀 및 경영기술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SKSM"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1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A)형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24페이지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총 10,000천원)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주)하나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점희망자 준비사항

아래 준비사항 표를 참조하여 사전에 준비하신 후에 에스크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 사업자(점주) 가입절차

구분	공인인증서	통장
가맹점 사업자	아래 비고에 따라 공인인증서 필요	(주)하나은행의 가맹본부 명의 통장 필요
비 고	- 가맹점 사업자 공인인증서 구분 주민등록번호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을 하였다면 ⇨ 개인용 공인인증서 준비 사업자번호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을 하였다면 ⇨ 기업용 공인인증서 준비 - 기존의 (주)하나은행 통장이 있으면 신규 발급 하지 않아도 됨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사전등록 했음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절차에 따라 에스크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가맹점 사업자의 에스프로 가입 절차

- ① www.hanaescrow.com의 화면에서 조회센터 클릭 "프랜차이즈 B2B" 선택합니다.
- ②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가?
 - 가맹계약 체결시 등록한 실명번호와 맞는 공인인증서를 이용 하는가?
주민등록번호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을 하였다면
⇒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자번호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을 하였다면
⇒ 기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③ 가맹점 사업자의 일반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약관 동의를 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 ④ 해당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게 되고, 동시에 에스프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입금 방법

- ① 가맹점사업별로 고유한 가맹금 예치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 ② 상기한 고유한 가맹금 예치 계좌번호로 최초 가맹금 (5,000천원)과 가맹보증금(5,000천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VI-2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B)형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앞 장의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과 함께 가맹점 영업시작 전까지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보험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1.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가맹(A)형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귀하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VII-2.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가맹(B)형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귀하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투자형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 계약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개점운영비	가맹점 오픈 시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오픈일로부터 3개월간	인당 실비
판촉지원	판촉 행사 시 판촉/홍보물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CRM	우수고객에 대한 고객 유입 DM발송	없음 (전 가맹점 해당)	분기별 1회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상기 (2.인력지원 내역) 개점운영비 이외 제도적인 지원내역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가맹 (A)형, (B)형 동일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Speedmate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대상 및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System 사용교육 및 각종 영업실무 교육 등	실습 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전산 교육	ERP System 활용법	실습교육	수시	필요시 참석
신입 교육	Speedmate 사업소개 CS 및 MOT Process System 사용법 각종 영업실무 등	합숙 실습강의	신입 정비사 입사 후 12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교육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Speedmate 점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1일 (온라인)	가맹본부 전액부담 원칙	1회 온라인 교육 후 필요 시 담당판매원 통한 상시 교육
전산 교육	상동		
신입 교육	상동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해진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해당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SM가맹사업팀 (02-1600-16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국세청 재무제표 : 24.9.1일부 SK네트웍스에서 물적분할 하였음. 분할 전 SK네트웍스 자료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